

19. 移住對策施行의 主要基準大幅改善

資料提供：韓國土地開發公社

I. 요 지

토개공은 종래 개발사업이 발표되는 경우 이주대책을 노린 불법전입 기타 부동산 투기 사례를 향후 전면 속단하기 위한 관점에서 이주대책 시행의 주요기준을 대폭 개선하고, 93. 1. 1부터 이를 시행키로 하였음

II. 개선 내용

가. 가옥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 강화 및 계속 거주요건 적용

- 현행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은 개발사업의 발표시점에 해당하는 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이 경과된 이후인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그 사업지구내에 거주한 자로 되어 있어 예정지구지정고시일이 경과된 이후 이주대책을 노려 사업지구내로 위장전입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 따라서 향후 대상자 선정기준일을 개발사업의 발표시점에 해당하는 사업지구 지정고시일 현재로 앞당겨서 「사업지구지정고시일 이전부터 동 고시일 이후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여온 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였음

나. 세입자 선정기준일 강화 및 계속 거주요건 적용

- 가옥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대상자를 사업지역지정고시일 이전부터 동 고시일 이후 보상계획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하여온 자로 금회 그 요건을 강화하는 점을 감안, 세입자에 대하여도 「사업지역지정고시일 3월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역 내에 계속 거주하여온 자」로 그 대상자 요건을 강화하였음

다. 거주사실 확인에 이용되던 인우보증제도 폐지

- 사업지역 내 거주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현행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통·반장 및 5인 이상의 연명에 의한 인우보증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어 허위의 인우보증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음.
- 따라서 향후 거주사실에 대한 현행의 「인우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하였음」.

라. 무주택여부 확인방법 강화

- 사업지역 내에 가옥을 소유한 상태에서 취학, 질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등으로 사업지역 외에서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행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 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 이 경우 무주택여부의 확인은 주민등록등본과 그 주소지상의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고 있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 따로 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그 확인이 불가하였음
-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무주택확인은 정부의 주택전산망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므로서 대상자 선정의 오류가 없도록 하였음」.

마. 개발사업 발표를 전후한 무허가건물 난립현상 계속 불인정 방침

- 종래 개발사업의 발표를 전후하여 주거용 비닐하우스등 무허가건물이 난립하는 현상에 대하여는 「'89. 1. 24부터 이를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투기사례는 이를 철저히 배제하여 나가기로 함.」

III. 개선 효과

이주대책 및 세입자대책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금회의 개선으로 종래의 위장전입, 허위의 인우보증 및 이와 관련한 부조리의 발생등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대폭 경감될 것임.

다만, 개선방안 시행의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일부 민원의 증대가 예상되기는 하나 이는 향후 본전 개선방안의 일관된 시행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을 것임.